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기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8.

발 의 자 : 김기웅 · 이만희 · 서명옥
김석기 · 최은석 · 임종득
김소희 · 권영진 · 강명구
박성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소아환자의 야간·휴일 진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분산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나, 현행 규정에는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진료시간을 나누어 운영하는 순환진료 형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.

또한, 현행법은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나, 재정 보조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가변적이고, 야간 진료에 따른 적자 누적 및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이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의 지정을 기피하거나 진료 유지를 포기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.

이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순환진료 형태의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며, 지정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수가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아환자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2).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3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인접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기로 협의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제1항에 따른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시간 또는 진료실적에 미달하여 운영할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제4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중단하여야 하고, 제공된 혜택을

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.

⑥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·방법·절차와 제5항에 따른 지원·우대조치의 중단 및 혜택의 반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, 그 밖에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·방법·절차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의2(야간·휴일 소아 진료 기관의 지정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34조의2(야간·휴일 소아 진료 기관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인 접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 간 또는 휴일의 진료시간을 나 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기로 협의를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제1항에 따른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u>
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야 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 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<u>③ -----하하여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야간·휴 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하여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요 양급여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다.</u>
	<u>⑤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야</u>

<u>③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·방법·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	<u>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시간 또는 진료실적에 미달하여 운영할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제4항에 따른 우대조치를 중단하여야 하고, 제공된 혜택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.</u> <u>⑥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·방법·절차와 제5항에 따른 지원·우대조치의 중단 및 혜택의 반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, 그 밖에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기준·방법·절차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
--	---